

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3차 본회의 (2015. 9. 4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--	1
2	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5
4	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7
5	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9
6	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	11
7	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3
8	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	15

〔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〕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8. 19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8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'15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
 - 현행 :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
 - 개정 :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
- 나. 사회보장 명칭변경
 - 지역사회복지 → 지역사회보장
 -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→ 지역사회보장협의체
 - 상근간사 → 직원
- 다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
 -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심의대상 규정(안 제5조)
 -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8조)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'15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,
- 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8. 19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8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제정이유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(15. 7. 1.)이 개정·시행되어,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「보건복지부 고시」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(안 제1조)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.
- 나.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(안 제2조)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(15. 7. 1.)이 개정·시행되어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

명문화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

-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8. 19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8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, 「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변경(안 제5조, 제6조, 제8조)
 - 기 능 : “심의” ⇒ “협의·조정”
 -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,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,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·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등
 - 위 원 장 : “위원 중 호선” ⇒ “부군수”
 - 위 원 :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,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군수가 위촉한 사람

- 위원장 직무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

나.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조항 삭제(안 제4장)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함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, 「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8. 19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8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-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668명 ⇒ 670명(증 2명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 -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: 증 2명
 - 현행 : 596명(본청274명, 의회11명, 직속기관94명, 사업소 45명, 읍36명, 면136명)
 - 조정 : 598명(본청276명, 의회11명, 직속기관94명, 사업소 45명, 읍36명, 면136명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〔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8. 19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8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-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 (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)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·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(안 별표 1)
 - 가조면 도리(10필지 342,671㎡) 일부
 - : 도리 689, 695, 695-1, 696, 697, 698, 820, 산10, 산13-2, 산24-8번지
 - ⇒ 가조면 석강리로 편입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(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)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·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8. 19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8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·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·제4조)
- 다.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포상,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·제7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에

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-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5. 8. 19.
- 나. 발 의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8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- 실버레포츠타운 시설 준공에 따른 각종 시설별 사용료 기준 마련 및 군정시책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기준 추가함(안 별표)
 - 다목적구장,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, 골프장 신설함
- 나. 사용료 경감조항 추가함(안 제15조제2항·제4항)
 -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 주관행사 시 80퍼센트 경감
 - 수영장 이용 월 회원 중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퍼센트 경감
- 다. 상위법령 위반 등 정비대상 조항 삭제함(안 제10조제2항, 제24조제3항)
 - 사용허가 및 위탁 취소 시 손해배상 관련 규정 삭제
- 라.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조항 삭제함(안 제2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실버레포트타운 시설 준공에 따른 각종 시설별 사용료 기준마련 및 군정시책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8. 19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5. 8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제정이유

-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(안 제2조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나.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(안 제3조)

-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
- 교육여건 개선 사업
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)

-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계획을 매년

수립·시행하도록 함

라.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(안 제6조)

-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,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**안 제2조에서*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및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등에 의한 지원대상에 관하여,
 - **안 제3조에서**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의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,
 - **안 제4조에서**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,
 - **안 제6조에서**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,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